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 | 대학혁신위원회규정 | 규정번호 | 3-8-40 |
| | | 제정일자 | 2022.05.01. |
| | | 개정일자 | 2023.05.01. |
| | | 개정차수 | 1차 |
| | | 소관부서 | 전략기획처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부·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적 관리를 위한 대학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중·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기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발전계획 및 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요 사업(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및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)계획 및 운영의 총괄 점검, 예산 계획 수립, 사업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- ③ 교무처장, 입학홍보협력처장, 학생성공처장, 산학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평생교육원장, 교목실장,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④ 임명직 위원은 내·외부인사로 당연직 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⑤ 위원회는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수요자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